

통신판매업체 인증 표시·광고 규정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최근 친환경·GAP식품(농산물, 가공품) 등의 안전·안심 인식 확대로 소비 수요 및 온라인 판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소비자가 친환경 인증품으로 오인하도록 유기농(Organic), 무농약, 친환경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문구 등과 마크를 무분별하게 사용하여 표시·광고하거나 GAP 인증품으로 오인하도록 GAP 또는 농산물우수관리 문구와 마크를 사용하여 표시·광고하여 판매하는 경우 또한 늘어나, 소비자 오인과 혼동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인증관련 부정유통신고(과대광고) 또한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인증 관련 표시 및 광고 방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인증 표시·광고 시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친환경 및 GAP 인증품의 올바른 유통질서 확립을 통한 판매자의 권익 보호와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귀하의 사업도 번창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5월 12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서울사무소장 드림

통신판매업체 인증 표시·광고 규정 안내

1. 온라인 쇼핑몰 등의 유기·무농약 표시·광고 방법

- 인증을 받은 가공식품(제품): 인증로고(유기 70% 제외), 제품별 주 메인화면에 유기·무농약 문구 표시·광고 가능
- 인증 받지 않은 원료를 사용한 가공식품(제품): 친환경인증과 관련한 모든 표시·광고 및 유사한 표시·광고 불가

* 표시 불가: 유기, 무농약 또는 친환경이라는 문자(한자 포함), Organic · Non Pesticide · Pesticide Free · bio · eco 등 외국어 문자,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등

- 사용된 원료가 인증을 받았더라도 최종 제품에 인증을 받지 않은 가공식품(제품): 인증로고 및 제품명, 제품별 주 메인화면에 유기·무농약 문구 표시·광고 불가

- 유기·무농약 원료가 70%이상 사용된 제품: 제품별 메인화면을 제외한 상세설명 화면에는 유기·무농약 문구를 원료별 함량과 함께 표시 가능(전체가 유기·무농약 이라는 의미의 표시·광고는 금지)

- 유기·무농약원료 70%미만 사용된 제품: 위의 유기·무농약 원료가 70%이상 사용된 제품의 표시·광고방법 동일 적용

※ 표시·광고 부적정 사례

- 인증을 받지 않고 자체적 생산·관리하며 제품에 유기·무농약 등의 문구표시 또는 광고하는 행위
- 인증 받은 원료를 사용하였으나 최종 제품에 인증을 받지 않고 유기·무농약 등 인증품으로 표시·광고하는 행위(온라인 쇼핑몰의 제품별 메인 또는 상세설명 화면의 표시·광고 시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될 수 있는 행위 포함)

외국에서 유기인증을 받은 식품이더라도 ‘유기’, ‘Organic’, ‘오가닉’ 등의 표시를 하려면 국내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거나 유기식품으로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유기식품으로 수입신고: ‘수입신고확인증’ 상 ‘유기식품등 여부’에 “예”로 되어있는 경우

◎ 유기·Organic등 표시·광고 규정

최종 생산국가	유기식품 수입신고 또는 국내 유기가공인증	유기식품 미신고 또는 국내 유기가공 미인증
EU, 미국	표시·광고 가능	표시·광고 불가
EU, 미국 이외국가	표시·광고 가능	표시·광고 불가
국내	표시·광고 가능	표시·광고 불가

※ 판매목적의 직구 또는 구매대행의 경우는 유기식품 광고(해당국의 인증서, 인증마크, organic/bio 문구있는 제품 사진 포함)가 불가합니다.

2. 관련 법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 법 제30조(인증 등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친환경 문구 표시 및 유사한 표시의 세부기준)

○ 법 제30조제1항제2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유기표시, 무농약 표시, 친환경 문구 표시 및 이와 유사한 표시(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포함)를 하는 행위

○ 법 제30조제1항제8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거나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유기, 무농약, 친환경 문구 포함)하는 행위

○ 법 제60조(벌칙)- 법 제30조제1항제2호, 제8호에 해당하는 표시·광고 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9조(거짓표시 등의 금지)제1항제2호

○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이 아닌 농산물 또는 농산가공품을 우수표시품으로 광고하거나 우수표시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하는 행위 금지

○ 법 제119조(벌칙)제1의2- 법제29조제1항제2호 위반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